



# 성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## 제목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학교) 및 건축범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도시계획과-2320(2015.03.20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성북구 돈암동 우촌초등학교의 도시계획시설(학교) 및 건축범위 변경결정 신청에 대하여 성북구 2015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“원안수용”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,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
### 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시설결정 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학 교	초등학교	서울시 돈암동 609번지	3,998.0	감5.9	3,992.1	서고시 제1994-323호 (1994.10.07)	도면변경 없음

### 나. 건축범위 변경결정 조서

건폐율(%)		용적률(%)		높이(층)		건축제한 완화	비 고
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35	35	150	150	6	7	-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

※ 교사2동에 한해 높이변경 함.

다. 고시방법 : 구보게재(고시예정일 : 2015.03.26.)

붙 임 : 고시문 1부. 끝.

주무관

**이지관**

도시계획담당

**배창식**

도시계획과장

**최태규**

도시환경국장

03/23  
**김장수**

협조자 주무관

**김하연**

시행 도시계획과-2379 ( ) 접수 ( )

우 136-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<http://www.seongbuk.go.kr>  
전화 02-2241-2765 / 전송 02-2241-6543 / [d1w174@sb.go.kr](mailto:d1w174@sb.go.kr) / 대시민공개